<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 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u> <u>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u>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 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주)교동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11010027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1.07.1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3.12.07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 길 36, 2 층 3 호(주)교동 대표번호(가맹사업부와 동일) **T**: 1544-7283 / 02-511-2544 **F**: 02-545-8992

tjkim@jeonssam.co.kr www.jeonssam.co.kr

<목 차>

-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교동전선상	J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36, 2층 3호				
(주)교동	법인 설립등기	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0.04.30		2010.05.01.	김태준	02-511-2544		02-545-8992
	법인등록번호 110		111-4340719	사업자등록번호		114-	-86-8078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11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36, 2층 3호			
사용인 (대표이사)	김태준	교동전선생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대표이자)		김태준	02-511-2544	02-545-8992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4 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쉐단어ㅇ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	-	_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해당없음				
일부를 인수함	에 강 값 급	-	-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에스엔피컴퍼니		2015.07.0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5-9	김태준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교동전선생	_		
상 호	교동전선생 OO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교동전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430900000		
상표(서비스표)	교동전 선생	서비스표 등록번호:4103559160000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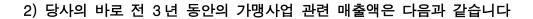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473,346	1,237,161	-763,815	457,663	-183,758	-187,868
2022년	496,834	1,421,074	-924,239	1,164,424	-162,523	-160,424
2023년	466,098	1,419,955	-953,856	872,681	-18,631	-29,616

그 근거자료는 별첨 1 과 같습니다.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1~23년



당사는 가맹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1)의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사업경력				
교민에구	이급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태준	2015.07.09~현재	(주)교동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기업 기업	상근	비상근	역전구(평)	
2023년 12월 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교동전 (상표권)	43 류	출원일 2011.08.05 등록일 2012.10.25	출원번호 4120110023317 등록번호 4102430900000	(주)교동	2032.10.25



교동전 선생		출원일	출원번호		
mor. 00	43 류	2015.07.15	4120150033800	(주)교동	2026.04.15
		등록일	등록번호		(2026.04.15)
		2016.04.15	4103559160000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교동전선생]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가맹점 오픈일): 2010년 05월 01일

※가맹사업 이전의 교동 전 선생: 당사의 대표이사와 지인(선후배)들이 각자 독립적인 사업체로 [교동전선생]이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한 것에서 시작됨.

2. [교동전선생] 연혁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교동	교동전선생	김주환,박동재 (공동대표)	2010.04.30 ~2015.07.0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2 길 8, 3 층(방배동, 미소빌딩)
(주)교동	교동전선생	김태준	2015.07.09~현재	서울시 성동구 아찬산로 7 길 36,2 층 3 호

3. [교동전선생] 업종

영업표지	업종		
교동전선생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모듬전 류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교동전선생]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시탁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36	36	_	34	34	_	33	33	_
서울	26	26	ı	24	24	-	23	23	_
인천	1	1	_	1	1	-	1	1	_
경기	4	4	ı	4	4	-	4	4	-
부산	2	2		2	2	_	2	2	_
대구	1	1	_	1	1	_	1	1	_

광주	-	-	1	-	-	-	-	-	_
대전	-	-	-	-	-	-	-	-	_
울산	-	-	-	-	-	-	-	-	_
강원	-	-	_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_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1	1	-	1	1	-	1	1	-
경북	1	1	_	1	1	_	1	1	-
경남	-	_	_	-	-	-	-	-	-
제주	-	_	_	-	-	-	-	-	-

5. 바로 전 3년간 [교동전선생]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34	2	0	0	0	36
2022	36	0	0	2	0	34
2023	34	0	0	1	0	33

6. [교동전선생]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교동전선생] 가맹점사업자가 2023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만	2023년 :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된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기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위 금액은 가맹점별 POS 데이터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연간평균매 출액	면적3.3㎡ 당	상한	면적3.3㎡ 당	하한	면적3.3㎡ 당	-
전체	33(4)	382,964	21,287	1,185,714	51,484	90,468	5,547	4곳산정
서울	23(3)	_	_	_	_	_		_
인천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경기	4(1)	해당없음	_	_	_	_	-	5곳 미만
부산	2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대구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광주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대전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울산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강원	_	해당없음	_	_	-	1	_	5곳 미만
충북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충남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전북	_	해당없음	_	_	1	1	_	5곳 미만
전남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경북	1	해당없음	_					5곳 미만
경남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제주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당사는 현재 전체 가맹점의 POS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에서 POS 데이터상 매출액 파악이 가능한 가맹점 (4)곳의 가맹점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 실제 ()안에 표기된 (4)곳 가맹점의 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 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교동전선생]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교동전선생]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수	평균영업기간
2023	33곳	3,685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 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교동전선생]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 ,	C C, V/() 12 G/
구분	구분 수단	기간	기간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비공개	0	0	0	-
광고	_	-	0	0	0	_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금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 신한은행	방배중앙센 터 기업금융담 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98-5	02-581-2241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신한은	매장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멀티채널부)방문
행	직접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계좌가	방문시	교부 받아 보관

있는 사업자	인터넷 뱅킹 이용시	① 인터넷뱅킹(www.shinhan.com) 접속 → ② 인증서 로그인 →③ (기업뱅킹)클릭 → ④ 기업지원서비스(가맹금 예치제)클릭 → ⑤ (가맹점사업자 서비스페이지 바로 가기)클릭 → ⑥ 가맹본부명 및 사업자번호 기입 → ⑥ 가맹금예치신청서 내용 기입 후 예치가맹금 이체
신한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신한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본인이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통장	개설시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공성 개설시 필요서 류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개인인감 증명서 ⑤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신한은행에서는 가맹금예치에 관한 업무를 매장 방문으로 이루어지며 신한은행 계좌가 있으신 사업자는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맹금을 예치 하실 수 있습니다.

<u>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u>

- 1.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신한은행과 가맹금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 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 회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 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교동전선생]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 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 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	계약 체결 시 또는 영업개시일	경우에는 일부 반환될	물 취하여 오 멸되는 비용 으로 바하 아	「오는 및 군영글 취안 영모·사료제중, 「나하의 저스 미 의여 교의 이프 지의
교육비		S E T T E			-개점 전 조리/서비스 교육

2) 보증금액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2,000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상품/자재의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원·부 재료 대금 포함)

3)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ㅂ	금액(천원,부가세 포함)	
수문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합계	18,500	18,500
가맹비	11,000	11,000
교육비	5,500	5,500
보증금	2,000	2,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 ㎡ 당 금액 기준(30 평)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73,000~			_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인테리어	가맹본부	54,000	1,800			180 만원/3.3 m²
주방/홀 설비 및 집기	가맹본부	22,000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간판	가맹본부	점포현황에 따라 별도안내				_
초도물품	가맹본부	점포현황에 따라 별도안내				_
POS	협력업체	_				_
별도금액	자체조달 및 가맹본부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컴퓨터, 테라스 등	자체조달 및 가맹본부	소방설비, 가스증설,	당실, 냉난방기, 외장, 전기증설, 전화기, 컴퓨터, 라스 등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①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하여야 합니다. 직접 설치/구매 시 3.3m²당 (33만원, VAT포함)의 감리비가 청구됩니다. 품목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 계약체결 시 당사와 별도 협의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점포 미보유 시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구함 점포 보유 시 : 최소 점포 기준 59.4 m² 이상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 당사는 귀하에게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보건증 소지자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보건증 소지자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점포규모: 66 m²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상기 내역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8) 당사는 가맹금을 납부함에 있어 분할 납부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며 가맹계약에 명시된 대로의 이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u>21) 22, 171/11 22/</u>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월 300	다음 월10일	영업개시 후 반환되지 않 음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 -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점포환경개선 시 당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Ⅷ-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당사가 물류를 공급하는 2 곳 가맹점의 차액가맹금을 산정하였으며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30 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 일 이전에 당사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잔여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보유한(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게 될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 3 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 받은 경우에는 제 3 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만료될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BI·CI를 개발 및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귀하의 가맹점 내의 간판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비용은 귀하와 협의하여 부담한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계약의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에 가맹비(1,100 만원, VAT 포함), 교육비(550 만원, VAT 포함), 보증금(200 만원, VAT 없음)을 납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 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가맹비(1,100 만원, VAT 포함), 교육비(550 만원, VAT 포함), 보증금(200 만원, VAT 없음)을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귀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교동전선생"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일부를 당사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메뉴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교동전선생]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별처 3 차조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교동전선생]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 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는 [교동전선생]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①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메뉴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개점 전 당사가 지정한 메뉴만 판매해야 합니다. 지정된 메뉴를 판매하지 않거나, 지정된 메뉴 외 다른 메뉴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당사가 귀하에게 개점 전 지정한 메뉴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 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등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 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모듬전	기메지세네 지원		
해물파전	가맹점에서 정한 상품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외	0 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	----------	-----------	--------	----

			1회 위반: 구두 경고	
		거래상대방별로	2회 위반: 2회 이상	
미성년자	주류	기재된 제품은	서면 시정요구	
		판매할 수 없음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는 당사가 공급한 상품 및 원/부재료를 타 브랜드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기타 자영업자 등 당사와 계약한 귀하의 점포가 아닌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인근 [교동전선생] 가맹점사업자의 물품 부족 비상 시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모듬전	23,000	서면	_
해물파전	16,000	n,	"
그외	본사협의	n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 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증발인 입장 컴퓨 -	가맹본부	계열회사
전통 전과 막걸리를 판매하는 퓨전 음식점	교동전선생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귀하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500m (다만, 특수상권은 제외)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을 의미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구 있습니다. 구세	적인 절자는 나눔과 겉답니	<u> 1</u> 년.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 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시유 발생 → 당사 담동팀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아가현자	서타당 사람 글당 / 중시 급증급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직성	지하고 30일 이내에 농의 여무
히변동되는경우	금도 → 8급시국 단(전) 국경 → 기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	회신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싱	기 → 기맹점사업자 동의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
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시 → 기정점사업사 등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지역 재조정 완료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	/ O비시크 한성 산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교동 전선생'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교동전선생]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쿠팡	www.coupang.com	냉동즉석식품	완제품판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내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갸모만	자원일	기타온라인
2023	30	0	0	70

^{*}가맹점은 매출파악이 가능한 가맹점 4곳 매출액만을 산정에 포함하였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교동전선생]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D-180 ~ D-90
D-180 ~ D-90
①+15일 이내
D-180 ~ D-90
D-60일 이전
D-day
D-day
D-day
-
-

3)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 11 조 2 항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	
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	
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	
항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	
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	
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1.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1 조 1 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①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 ② 물품의 조달과 관리 ③ 거래상대방에 따른물품판매의 제한 ④ 메뉴판매의 제한 ⑤ 가격결정의 제한 ⑥ 영업시간 및일수의 제한 ⑦ 유니폼 착용 ⑧ 광고 및 판촉 ⑨ 경업금지 ⑩ 상품공급의중단 ⑪ 로열티의 납입 ⑫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비용	제6조
3. 실내장식, 점포확장/축소 및 이전, 외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제 7 조 2 항
4.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 8 조
5. "갑"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제 9 조
6.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 14 조
7. "을"의 요건 변동 시 "갑"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제 18 조제 2 항
8."을"이"갑"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 11 조 2 항
9.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제6조10항
10. 귀하가 계약체결일 또는 점포이전으로 인한 영업중단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	제12조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 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 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 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	
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3항
⑥ 귀하가 법 제 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⑧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	
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	
다리기 어려운 경우	
⑨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계약기간 중에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3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날부터 효력발생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 개월 전) → 양도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 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 양수인 교육→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영업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 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앞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_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지역 내에서] 귀하가 [교동전선생]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기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식사 및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 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영업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교동전선생]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14:00 (3시간) + 17:00~01:00 (8시간)	일요일, 공휴일 제외한 연중	문의: 영업팀 (02-511-2544)

^{*}상권별 운영시간 조정 가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3 에 의거 오전 0 시 또는 1 시부터 오전 6 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 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5명 이상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가맹점사업자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광고의 목적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당사는 [교동전선생]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9±94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T 다 결 시	-1
	전국 광고	브랜드광고	50%	50% (전체 가맹점 에 안분)	광고 진행 시 별도 협의	
광고			50%	50%	광고 진행 시 별도 협의	
전체 행사	가맹점모집광고		100%	_	_	
	7	개별광고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 부 검토→10일 내 승인 여부 통지	
	전국 및 지역별 판촉		50%	50%	판촉 진행 시 별도 협의	
판촉	7	개별판촉	-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 부 검토→10일 내 승인 여부 통지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가 자기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 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 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영업비밀의 범위	기간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귀하가 당사와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계약을 종료한 후 가맹계약서 제 13 조 1 항 및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사항(영업표지 사용중단 및 철거, 매뉴얼 등의 반환 의무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 만원)의 지체배상 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사와 귀하 어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다음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제 3 자에게 제 14조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당사가 가맹사업을 제 3 자에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해지일 직전 12 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x A

A: 잔여계약기간 기준: 1 년미만 시 2개월분, 1 년이상 ~2 년미만 시 4개월분, 2 년이상 시 6개월분

영업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 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

- ④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6 조제 9 항을 위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최초 가맹금과 위반일수에 따른 본사 공급마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9 조를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귀하가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⑥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6 조 제 2 항 제 1 호(물품의 조달과 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300 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① 당사의 지급요청일에 귀하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당사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귀하는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①항 내지 제⑥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다른 계약내용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패소한 자는 소송 등으로 소요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변호사보수 등)를 승소한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⑨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의 책임이 있습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_	35~40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기간 제외)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7일~14일 (변호사 및	
사업설명,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	가맹거래사 의 자문을 받은 경우 7 일)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가맹금 예치 안내 -가맹계약체결	2일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2일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착수	공사 실시	20일	
교육실시	메뉴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7일	
영업설비/ 집기 입고	-냉장고 등 입고 -그릇 등 입고	2일	
초도물품 입고	-유니폼 등 입고 -식자재 등 입고	1일	
그랜드오픈	-영업시작 -판촉 및 홍보이벤트 -예치가맹금 수령	당일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 -점포선정이 늦어질 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 -가맹점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 -종업원 채용이 늦어질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 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 연락 (방문/전화 등)	귀하가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2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3	자문확인서 수령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거래사/변호사 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4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일 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한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 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 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개선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제외사유
►점 설, 장비어 작업이 우 ► 안이 준로 가통지거 인현을 우지 생의 이사여의 유럽적 주의 보고 보고 하는 이 등에 되었다. 등가로 경 변화 유명하다 영업 지경에 가장하다 등에 유명하다 경우 무슨 이 유명 이 유명적 이 유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공사비용 (장비, 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 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 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 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 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 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 점사업자간 별도의 합 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10년,	점한경 생물로 이내에 의 하는 이 바이 이 한 는 이 바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시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 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개선사항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내	가맹본 부 부 담	문의: 영업팀
가맹점사업 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 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 맹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02–511– 2544)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교동전선생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교동전선생]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천원,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7일	2,200	최초 계약시 이수
신메뉴 교육	메뉴에 따라 상이	실비	신메뉴 개발 시, 필수적으로 이수
정기교육 및 부정기 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실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 및 훈련은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①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들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는 당사의 신메뉴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메뉴 교육을 받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거나, 메뉴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신메뉴 교육 외 당사가 실시하는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해당사항 없습니다.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_	_	_	_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교동전선생]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직영점이 없습니다.

단위 : 년, 개월)

2023년도말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_	_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_	_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별첨 2 필수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별첨 3 공급가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스러하이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수령확인	

아울러,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가맹본부에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무단 도용하거나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교동 (인)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T공복인	

아울러,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가맹본부에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무단 도용하거나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교동 (인)

____지역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맹본부 보관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 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 해주세요.

20 년 월 일

가맹본부 ㈜교동 (인)

지역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맹점 보관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 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20 년 월 일

가맹본부 (주)교동 (인)



선생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번호	접수일	처	리기간 즉	득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2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2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제 1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	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 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